과천도시공사 직제규정 시행세칙

제정 2020.02.05. 세칙 제2호
개정 2021.02.23. 세칙 제19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과천도시공사(이하 “공사” 라 한다)의 직제규정(이하 “규정” 이라 한다)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범위) 공사의 직제에 관하여 조례 및 정관 또는 직제규정 등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.
제3조(직위) 일반직 직원의 직급별 직위 및 호칭은 별표1과 같다.
제4조(조직) 공사업무의 경영효율을 신장시키기 위한 부서별 내부조직은 별표2와 같다.
제5조(정원) 공사의 각 부서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.
제6조(업무분장) 각 부서의 팀별 업무분장은 부서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공사 설립일 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세칙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 (개정 2021.02.23. 제19호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세칙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[별표 1]
(제3조 관련)

일반직 직급별 직위표

직 군	계 급	직 위	호칭(대외명칭)
행정직 기술직 체육직	3 급	실장·부장 또는 팀장 또는 직원	실장·부장
	4 급	팀장 또는 직원	팀장·차장
	5 급	직 원	계장
	6 급	직 원	대리
	7 급	직 원	대리

[별표 2] (개정 2021.02.23.)

내부조직 (1실 5부 18팀)(제4조 관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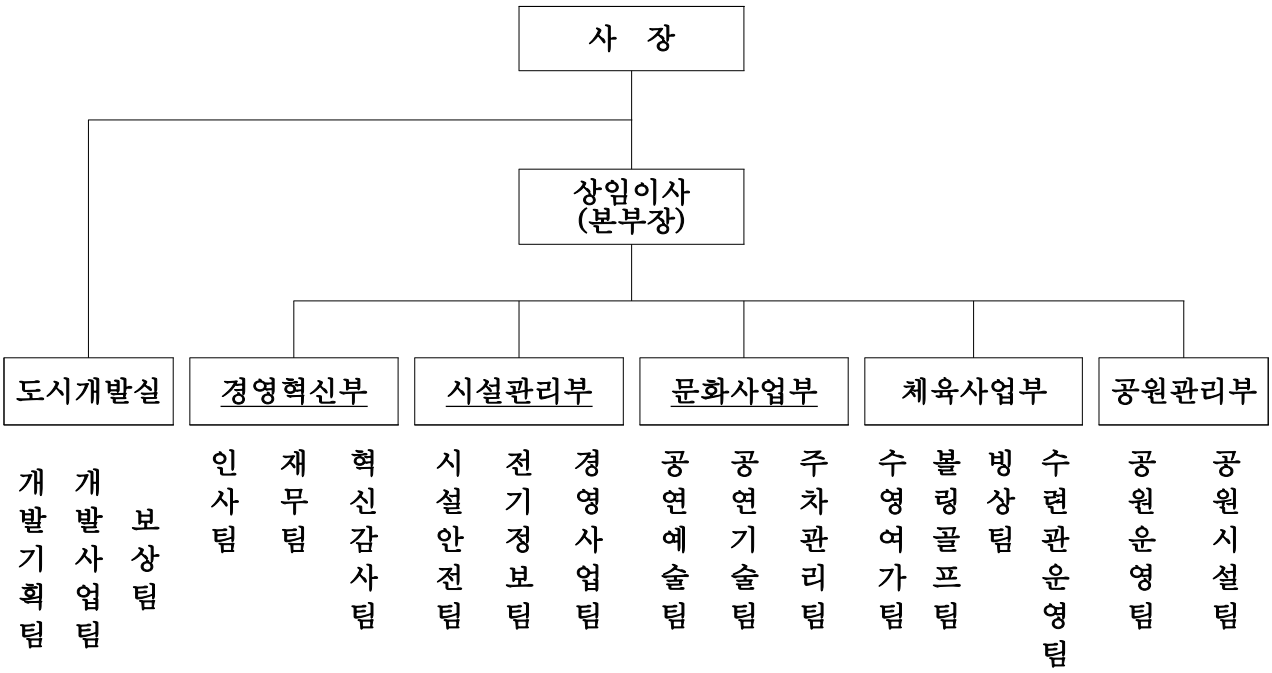

[별표 3](개정 2021.02.23.)

부서별 정원표(제5조 관련)

구 분		계	임 원	도시개발실	경영혁신부	시설관리부	문화사업부	체육사업부	공원관리부	비 고
합 계		134	2	17	14	22	21	43	15	
임원	소 계	2	2							
	사 장	1	1							
	상임이사(본부장)	1	1							
일반직		132		17	14	22	21	43	15	